

August 19, 2015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형사사건에서 몰수, 추징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는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범죄수익이 몰수 또는 추징되어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져 왔는데,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논거 하에 종래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그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통해 해당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관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거를 들어,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정청구 또는 항고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이승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41 | E-Mail. sslee@shinkim.com |
| ● 서범석 변호사 | TEL. 02 316 1621 | E-Mail. bsseo@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